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33
----------	------

발의연월일 : 2020. 9. 14.

발 의 자 : 한병도 · 김영주 · 박재호
허영 · 정일영 · 이원택
이형석 · 김승원 · 김철민
박홍근 · 김성주 · 이해식
정태호 · 김민석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기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의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악취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해결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에도 악취배출시설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지체 없이 확인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주기 변경, 정밀조사의 시행 근거 및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전 신고, 개선명령 이행상태의 확인 등을 규정하여 악취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수립된 종합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시책을 수립할 때에 종합시책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거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제5항 신설).

다.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8조의2 삭제)

라. 개선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명령 이행 후에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3항 신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관할구역”을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시책 및 관할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년”을 “5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하며, 수립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거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밀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을“(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중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악취 민원의 정도 및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의3제1항 전단 중 “악취관리지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라 한다)”를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라 한다)”로, “신고대상시설로”를 “악취배출시설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대상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대상시설”을 각각 “악취배출시설”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신고대상시설”을 각각 “악취배출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고대상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대상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신고대상시설”을 각각 “악취배출시설”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중 “신고대상시설”을 각각 “악취배출시설”로 한다.

제23조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이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한다.

제26조제1호 및 제2호 중 “신고대상시설”을 각각 “악취배출시설”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을 “제8조제1항”으로, “신고대상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한다.

제2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후단 및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후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2024년 1월 1일까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악취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5. “<u>신고대상시설</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u>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 배출시설</u></p> <p>나. <u>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생 략)</p> <p>② 지방자치단체는 <u>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③ (생 략)</p>	<p>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시책 및 관할구역</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 ③ (생략)

<신 설>

<신 설>

④ -----

5년-----시행하여야 하며, 수립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거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밀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중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악취 민원의 정도 및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
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
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
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
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
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
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고
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⑤ (생략)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신고대상시설을 상속, 양도, 합병을 통하여 승계한 자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르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 4. (생략)

제10조(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

② -----
-----악취배출시설-----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개선명령) ① -----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1조(조업정지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

-----.

②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조업정지명령) ① -----

---악취배출시설---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과징금처분) ① -----

제14조(개선 권고 등) ① 특별자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삭 제>

제22조(청문) -----

-----.

- 1. -----악취배출시설-----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2. ~ 3. (생략)

제23조(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이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2. -----악취배출시설

--

2의2.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수수료) 악취배출시설-----

-----.

제26조(벌칙) -----

-----.

- 1. -----악취배출시설

- 2. -----악취배출시설

제27조(벌칙) -----

-----.

- 1. 제8조제1항-----

-----악취배출시설-----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 또는 운
영한 자

2. 3. (생략)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
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의
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2. 3.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30조(과태료) ① -----

-----.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② -----

-----.

1. -----후단-----

변경신고를 한 자

2. (생략)

③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